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3, July 2020

I. 최근 통상 이슈

■ USMCA 발효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 강준하 교수 | 01

1. 개요: NAFTA 2.0 시대의 도래
2. 역내 공급망의 재구축: 원산지 규정
3. 디지털 경제 등 변화한 통상환경에 대한 규범 확립
4.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보호
5. 노동, 환경 등 사회적 가치의 강화
6. 중국에 대한 견제
7.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 안유화 원장 | 04

1. 머리말
2. 개정된 외국인 투자제도
3.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II. 주요 통상 일지

박정준 연구원 | 08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기조 등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 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I. 최근 통상 이슈

USMCA 발효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1. 개요: NAFTA 2.0 시대의 도래

USMCA가 2020년 7월 1일 발효된다. USMCA는 미국-캐나다-멕시코 사이에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존의 NAFTA를 대체하게 된다. USMCA 발효로 북미 지역의 역내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통합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USMCA는 NAFTA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1994년 NAFTA 출범 이후에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NAFTA 2.0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NAFTA는 총 22개 장(章, Chapter)과 관련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USMCA는 총 34개 장과 부속서 그리고 12개의 서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반부패(Anticorruption), 모범규제 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Macroeconomic Policies and Exchange Rate Matters) 등 기존 NAFTA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던 새로운 주제들이 대거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또한 지재권, 노동, 환경 분야에서 기존 NAFTA의 내용을 대폭 보완 강화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역내 공급망의 재구축: 원산지 규정

USMC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원산지 기준, 특히 자동차 분야 원산지 기준의 강화이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의 새로운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역내(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USMCA 발효 후 5년 동안 자동차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가 340억 달러 이상 늘어나고, 연간 신규 자동차 부품 구매액이 230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7만 6천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 원산지 기준의 핵심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역내 부가가치(RVC) 수준의 상향 조정이다. USMCA에서는 NAFTA에서 62.5%였던 승용차와 경트럭(Light Truck)에 대한 역내 부가가치를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자동차 부품 중 엔진, 자동변속기, 차대, 차축 등 핵심부품(core part)에 대하여는 반드시 역내산(originating)을 사용하여야 하며, 7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요구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 중 타이어, 펌프,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principal part)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요구하며, 보조부품(complementary part)의 경우에는 6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부가가치(LVC) 기준의 도입이다.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생산 시에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북미 지역의 근로자에 의해 해당 제품의 40~45%가 만들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철강·알루미늄의 사용 요건이다. 자동차 생산자는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 이상을 북미산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엄격하고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북미 지역 현지에서 생산된 재료와 부품을 가지고 북미 지역 근로자에 의해 자동차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공급망과 생산시설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USMCA가 의도하는 바이다.

한편으로 원산지 증명 및 통관과 관련된 요건과 절차는 상당 부분 기업 친화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 먼저 USMCA에서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할 필요 없이 물품 송장(invoice) 등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를 사용하여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으며, 전자적 수단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가 작성되고 제출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NAFTA에서는 생산자와



강준하 교수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미국 뉴욕주 변호사

T. 02-320-1807

E. jhkang@hongik.ac.kr

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던 것을, USMCA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3. 디지털 경제 등 변화한 통상환경에 대한 규범 확립

USMCA에 디지털 무역이라는 새로운 장이 포함된 것은 1994년 NAFTA 출범 이후에 변화된 통상환경에 기인한다.²⁾ 과거에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상품의 거래와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급증하였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환경하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하여 국경간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상품 협정이나 서비스 협정으로는 새로운 현상을 규율하고 관련 상거래에 대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 디지털 무역 장에서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차별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정보의 국경간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를 금지하였다.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었으며, 정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기만적인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를 활용한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재권과 관련해서도 기존 NAFTA에서 규정되었던 내용이 현대화되는 한편 지재권 전반에 대한 보호와 집행이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자 사후 70년 또는 출판 이후 7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도 최소 10년에서 최소 15년으로 연장되었다. 특허와 관련해서 심사기간이 비합리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농업화학물에 대한 데이터 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영업비밀(Trade Secret)과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Design)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4.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보호

USMCA의 특징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이 별도로 마련된 점이다. 최근 디지털 교역 규모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역동적이고 창의적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USMCA는 각국의 경제 및 역내 통합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과 중소기업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USMCA는 중소기업 위원회(SME Committee)를 설치하여 정보제공, 교육 및 모범관행 공유,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위원회는 민간기업, 협회, 학계, 전문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중소기업 대화(Trilateral SME Dialogue)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참석자들로부터 USMCA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듣고, USMCA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여론수렴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 장 뿐 아니라 협정문 곳곳에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통관관련 중소기업 친화적 절차 도입 조항, 디지털 상품에 대한 무관세와 차별금지 조항, 지재권의 강력한 보호 조항, 국경간 서비스에서 SME 배려 조항 등이 그러하다.

5. 노동, 환경 등 사회적 가치의 강화

USMCA의 또 다른 특징은 노동과 환경 분야의 강화이다. NAFTA에서는 노동, 환경이 별도의 협정(Side Agreement NAALC 및 NAAEC)으로 되어 있었으나 USMCA에서는 이를 협정문 본문으로 편입하여 한층 통일성 있게 규율하고 있다. USMCA 환경 장은 무려 32개 조문을 가진 방대한 장(章)으로, 다양한 분야의 환경문제를 상세하고 다루고 있다.³⁾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광범위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므로 대기환경보호, 해양환경보존, 불법어로 금지, 동식물 보호, 외래종 유입 금지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USMCA 환경 장은 내용면에서 크게 보면 ①대기와 관련된 내용, ②해양과 관련된 내용, ③산림과 관련된 내용, ④동식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USMCA는 특히 국내법 집행에 있어서 관련된 조문의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환경법 미집행으로 인한 무역 및 투자에의 영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소국이 아닌 피소국에 부담시켜 환경법 집행의 강화를 압박하고 있으며, 기존 공중의견제출제도를 승계하면서도 그 절차를 신속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환경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대기·해양·동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과 관련해서도 당사국들이 ILO 핵심 기준을 도입,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강제노동(특히 아동에 대한)으로 생산된 물품의 교역을 금지하였다. 또한 노동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 금지, 이주 노동자 보호, 직장 내 차별 철폐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한편으로 멕시코 생산시설에서의 노동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행을 위한 신속 대응체제(Rapid Response Mechanism)가 도입되었다.

6. 중국에 대한 견제

USMCA의 당사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이지만 USMCA 협정문에는 중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영기업 및 환율 관련 조항이다. USMCA는 제 22장에서 국영기업을 다루고 있는데, 국영기업이 일반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먼저 국영기업에 대한 정의를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의결권의 50% 이상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거나, 이사진의 다수에 대한 임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여,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뿐 아니라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국영기업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영기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 및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그로 인한 수출품의 인위적 가격 인하도 미국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문제 중 하나이다. USMCA는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장을 별도로 두어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거시경제 조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USMCA는 또한 환율정책과 관련된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투명성 및 보고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어 중국적으로 무역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감시국(Monitoring List)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관련 조항을 USMCA에 포함시킨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협정문의 표준화(Template)를 위한 것으로 향후 다른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내용은 USMCA 당사국이 비시장경제 국가(Non-Market Country)와 FTA 협상을 시작할 경우에는 다른 당사국들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다. 동 조항에서는 만약 USMCA 당사국이 비시장경제 국가와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다른 당사국들에게 설명하고, 협정문 서명시 FTA 협정문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 중 일부가 비시장경제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 USMCA 다른 당사국은 그 국가와의 USMCA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다분히 이례적인 것으로 결국 USMCA 당사국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FTA 협상을 자제하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 문제에 대하여 북미 3국이 공동의 대오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된다.

7.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USMCA는 미국-캐나다-멕시코에 적용되는 무역협정이지만, 북미 지역을 주요한 시장으로 하고 있고, 동 지역에 대한 투자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도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특히 자동차 원산지 기준의 강화는 멕시코 등에 현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에게는 민감한 문제이다. 원산지 기준 강화로 수입재료나 부품보다는 북미 공장에서 생산된 재료나 부품을 사용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특히 철강 알루미늄 사용 요건에 따라 제품의 공급망이나 생산구조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가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2020년 7월 1일 발효된 USMCA는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일 수 있다.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USMCA에서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 및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대비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1) KITA,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 공급망의 변화", 통상리포트 (2020.5.20) 참조.

2) USTR, "USMCA Digital Trade",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fs/USMCA/USMCA-Digital_Trade.pdf 참조.

3) 강준하, "USMCA와 환경", 『국제경제법연구』, Vol. 18, no. 1, pp. 37-60 참조.

I. 최근 통상 이슈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1. 머리말

2020년 1월 1일부터 작년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¹⁾ 다른 법률과 달리 본 법은 기업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5년의 전환기간을 만들었다. 또한 올해 1월에 외상투자법의 실시세칙도 발표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의 3가지 '외자 3법'이 중국에서 시행되면서 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나 신 법률이 효력 발생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조직 기구 및 활동 표준은 "회사법", "합화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²⁾ 기업유형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및 파트너십 회사로만 구별하며 더 이상 "중외합작"기업 및 "중외합자"기업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다. 이러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변화는 2020년 COVID-19 사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변경된 "외상투자법"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되짚어 보고, COVID-19 시국에서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개정된 외국인 투자제도

가. 투자의 정의

법률의 적용범위, 즉 외상투자법에서 정의하는 투자는 외국의 자연인, 법인이 중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가리키는데, FDI, 인수합병, 재투자를 포함한다. 중국의 자연인도 외상투자기업에 투자가능하다. 과거 "외자 3법"에 의해 열거된 방법으로 인해 중국인 자연인은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인 자연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막았다. 신 외상투자법은 시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국 자연인의 자격을 중국 투자자의 자격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민간투자자와 외상투자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나. 외상투자법의 주요내용

1) 투자촉진

이번 외상투자법은 투자촉진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외국인 투자촉진 메커니즘을 수립 및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주로 아래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투자촉진 제도를 규정하였다:

- (i) 외국인투자 진입 이전의 국민대우를 실행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업종에 투자할 수 있느냐는 네거티브 리스트 포함된 업종이외에 내자와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든 투자할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면 외국인은 내국인처럼 자유롭게 들어오거나 동등한 투자조건에서 들어올 수 있다.
- (ii) 국내외 자본은 산업정책에서 동등한 대우를 실시한다. 외상투자 법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산업 우대정책을 외국인 투자기업 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률 제정에서 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요구를 동등하게 들어줘야 하며, 외국투자와 관련된 법규문서는 적시에 게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안유화 원장

-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T. 010-7187-2088

E. yuhuaan7@gmail.com

- (iii) 외상 투자기업은 중국의 표준제정에 관해 항상 충분한 발언권이 없었지만 앞으로 표준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다. 표준제정은 기업에 아주 중요하며 정부조달 참여도 똑 같이 중요하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품에 대해 정부 조달이 동등하게 취급된다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항목도 포함한다.
- (iv)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 외상투자법에 따라 주식, 회사채 등 발행을 통해 용자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중국 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과거 외국인은 국내에서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주주가 상당부분 중국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 요구가 취소되어 용자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 (v)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약속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의 약속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한 약속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이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적 관할권 내에서 지방정부는 투자촉진정책을 쓸 수 있는 데, 주로 다양한 우대혜택이 주어지고, 일단 결정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투자보호

- (i) 외국인의 투자 재산의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외상투자법은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지만 공공이익을 위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보상 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수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수용은 예외 조항으로서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외상투자법은 외국투자기업의 이익과 원금의 반출에 대해 이전할 자유와 태환 자유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자본항목 아래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자유롭게 태환하여 반출할 자유가 있다.
- (ii) 외국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가 외상투자법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우선 지적 재산권 침해의 경우 법률에 따라 엄격히 법적 책임을 묻는다. 다음 정부 행정기관 그리고 그 직원은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며, 중국정부는 기술 이전을 전제로 외국인 투자를 승인하면 안 된다. 또한 행정기관과 그 직원은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 투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 비밀을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배상 제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새로 개정 된 '상표법'과 '특허법' 모두 처벌적 보상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한 원칙적 조항 외에도 외상투자법의 도입에 따라 일부 세분화 된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이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국무원은 <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와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등 법규를 개정했다.

- (iii) 외국인 투자관련 정책문서에 대한 법적제약을 강화하고 정부가 규범적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한한다. 정부는 문건을 만들어놓고 기득권을 손상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기득권 보호라고 한다. 정부의 합의에 따라 지금 얻은 기득권의 이익을 무효화 하는 규정을 더 이상 통과 될 수 없을 뿐더러 외국인은 특정산업 에 진출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할 수 없다.
- (iv) 지방정부가 외국인 진입이전에 해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투자관리

- (i) 외상투자법은 일부 다른 법규와의 연계도 규정하는데, 만약 법률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면, 외상투자법은 별도의 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법규 집행에서는 서로 다른 법규들 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 예컨대 외국인 투자기업이 만든 사업이 있다면 세금, 외환관리 등을 포함하여 이들 규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ii)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은 건별 승인체제에서 정보보고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개혁 개방 초기에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대해 건별 승인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특별관리대책(네거티브리스트)이 발표되었다.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기업의 설립과 변경에 대해 등록제를 실행하였다. 신 외상투자법이 발표된 이후 외국투자기업을 신규 설립할 경우, 더 이상 중국 상무부의 건별심사가 필요가 없고, 공상행정 관리국에 보고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One Netcom Office"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과 변경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국 기업신용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도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감독, 상업업무 및 외환 연도보고서의 "각 부처별 보고서의 통합화"을 실현하여 기업설립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업무추진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리스트 안에 있는 산업에 투자할 경우 상무부의 심사하고 공상국에 설립등기가 필요하다. 그 이외의 산업의 경우 유관기관에서 등록만 하면 된다. 정보보고제도는 외국투자기업이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등록시스템 또는 기업신용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기관에 직접 보고하며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 (iii) 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 이사회는 더 이상 최고 권력기관이 아니다. 오랫동안 중국과 외국의 합작투자자와 합자기업에서 '외자 3법'은 이사회가 기업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규명하고 있지만 신 외상투자 법이 시행 이후, 외상투자기업의 최고 권력기관은 내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주주총회"로 규명한다. 기존의 중외합작투자기업과 합자기업은 미리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기존의 외국인 독자기업의 경우 <회사법>을 따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 또한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분양도는 합자경영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지만 신 외상투자법 발효이후 회사 주주간의 양도는 별도의 동의가 없이 가능하며, 대외에 양도할 경우 주주의 절반이상의 동의를 있으면 가능하다.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받아야 하며, 양도받지 않을 경우 동의로 간주된다. 이익분배의 경우 기존의 합자기업은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하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별도의 비율로 분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신 외상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회사법에 따라 중외합자경영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며, 그러나 전체 주주가 동의할 경우 별도의 분배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 (iv) 국가안전심사제도는 국무원의 별도 규정과 조례에 따른다.

3.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외국인의 중국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 개혁개방 3.0 버전을 작동하고 있다. 동 개혁의 핵심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외국 자본 유치에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책과제임을 말한다. 2018년부터 중국과 미국은 무역 분쟁을 벌여왔고 올해 1월에는 1단계 무역협약안도 체결하였다. 하지만 COVID-19 위기가 터지면서 현재 1단계 협약안 실행여부를 포함하여 홍콩보안법, 미국과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실행에 따른 탈중국화 등으로 중미 양국의

대립은 나날이 격화되어 가고 있고 전 세계는 역 세계화와 무역과 투자 보호주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유엔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전 세계 다국적 직접 투자가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³⁾ 앞으로 중미 양국간 관계에 따라 글로벌 밸류체인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글로벌 경제환경도 부단히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역과 투자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화 확대와 국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 기반의 법률 및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건설을 가속화 할 것이며, 세계 각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상호 이익과 상생의 결과를 더 잘 달성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까지만 해도 190건 넘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제한 조항이 현재는 37건만 남아있다.⁴⁾ 중국은 현대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금융업·보험업·양로서비스업 등 영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을 취소하고 외국인지분에 대한 제한도 없애고 있다. 외국기업의 국민대우를 확대하여 외자기업에게 평등한 대우를 주고 외국기업도 세수·재정 등 우대정책 혜택을 받고 공평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투자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기업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소프트' 환경이 좋아진 것도 중국의 외자유치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는 빅데이터와 AI 및 언택트 인프라가 중요해지고 있는 포스트 COVID-19 디지털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만약 중국정부가 확실하게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외국인투자를 위한 최고의 경영환경을 마련하게 될 경우, 미래 디지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사슬 생태계와 막대한 국내시장, 그리고 데이터 환경을 보유한 중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글로벌 최대 외상투자 유치국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제조대국이며 제조업부가가치가 4조 달러로 10년 연속 세계1위이다.⁵⁾ 미국의 2.3조, 일본의 1조, 독일8060억, 한국은 4590억달러이다.⁶⁾ 중국의 개방은 산업사슬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스트림·미들스트림·다운스트림 등 측면에서 완전한 상중하 산업체인이 개방될 것이다. 이는 생활용품부터 생산용품, 고신기술에서 노동밀집형 상품에 전반에 이르기까지 내수시장이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소비는 전 세계 소비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며,⁷⁾ 이러한 현지 시장으로의 진출은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1만달러 시대를 연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편견보다 기회의 눈으로 중국시장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 1) 원문은 다음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主席令第二十六号]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2019년 3월 15일 공포, 2020년 1월 1일 시행
<http://www.npc.gov.cn/npc/c30834/201903/121916e4943f416b8b0ea12e0714d6683.shtml>
 - 2) 구체적인 외자3법 및 회사법 관련 법률적 분석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외자3법 폐지에 따른 회사법의 원칙적 적용)”, Newsletter (March 2019) 참조
(<http://www.leeko.com/news/china/201903/china1903.html>)
 - 3) <https://news.un.org/zh/story/2020/06/1059882>
 - 4) <http://www.cnfl.com.cn/news/cs/2019/0929/400186.html>
 - 5) <https://howmuch.net/articles/map-worlds-manufacturing-output>
 - 6) <https://howmuch.net/articles/map-worlds-manufacturing-output>
 - 7) <https://bajijahao.baidu.com/s?cid=16492810392788185768&wfr=spider&for=pc>

II. 주요 통상 일지

날짜	내용
1.6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자국 기업 인공지능(AI) 관련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조치
1.13	 미국 재무부,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에 따른 외국인 투자 '안보 심의' 강화 추가 발표
1.14	 미국, 일본, EU, WTO 보조금 규칙 개정 · 강화 방안 관련 공동성명 발표
1.28	 미국 하원, '티베트정책 · 지지법안(The Tibetan Policy and Support Act)' 통과
2.18	 미국 국무부, 중국 국영언론 '외국사절단'(신화통신,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 5개) 지정
2.28	 미국 상원, 중국 화웨이 장비 구매금지법안 통과
3.1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아일랜드 네오드론 제소에 따라 삼성, LG, 애플 등 터치스크린 특허침해 조사
3.19	 미국 ITC, 한국 · 벨기에 · 남아공 산 아세톤 덤핑 소송 최종판정(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  한국, 미국과 양자간 통화스와프(600억 달러) 체결 발표
3.23-26	 한국, 러시아와 서비스 · 투자 FTA 협상(4차) 개최
4.2	 한국, 미국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5차) 개최
4.3	 미국, 국방물자법(DPA) 가동해 3M에 마스크 생산 명령
4.13	 EU, 중국 · 대만 · 인도네시아 산 열간 압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4.22	 미국 미주리주, 코로나19 대응 부실에 대해 중국 손해배상 소송 제기
5.1	 한국, 싱가포르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와 기업인 이동 및 교역 원활화 위한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



박정준 연구원

T. 02-772-4806

E. jeongjoon.park@leeko.com

약력보기 ▶

날짜	내용
5.6-15	 영국, 미국과 FTA 협상 개시
5.11	 중국, 미국 · EU 산 합금강관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5.11-15	 영국, EU와 미래관계 협상(3차) 개시
5.12	 중국, 대미 추가관세 리스트에서 희토류, 강화유리 등 품목(79개) 제외
5.14	 미국 상원, '위구르인권정책법(The 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 통과  WTO 아제베두 사무총장, 중도사퇴 결정 발표  G20, 기업인 이동 원활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 합의 · 발표
5.20	 미국 상원, '외국기업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통과
5.22	 영국, 5G 구축 사업에 화웨이 배제 지시
5.26-29	 한국, 중국과 서비스 · 투자 FTA 후속협상 개최
6.2	 한국,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 EU · 영국 · 인도 · 이탈리아 등 9개국 디지털세 조사 개시 발표
6.4	 미국 상무부, 금속 바나듐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 발표
6.5	 미국 상무부,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 중국 기업(33개) 제재 발효
6.9	 영국, 일본과 FTA 협상 개시
6.16	 미국 교통부, 중국 항공사 여객기 미국 운항 금지
6.23	 미국 국무부, 중국 국영언론 '외국사절단'(중국중앙TV, 중국신문사,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4개) 추가 지정
6.24	 미국 국방부,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원하는 기업(화웨이, 히크비전 등) 지정
6.30-7.6	 한국, 러시아와 서비스 · 투자 FTA 협상(5차) 개최
7.1	 USMCA 발효

(참고)파란색 표기는 미국의 대중 제재조치에 해당

III.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발간 목록

❖ 2020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USMCA 발효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강준하(홍익대)	2020.7
2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안유화(중국증권행정연구원)	
3	Brexit: The imminent crisis in the EU-UK trade negoti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2020.3
4	우리나라 기업지원프로그램의 보조금 특정성 사례분석 및 시사점	조영재 변호사(광장)	
5	2020년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0.1
6	[Special Issue Brief] 미-중 경제 · 무역협정: 주요 내용 및 분석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2019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맞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디지털세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박정준 연구원(광장)	2019.8
2	[Special Issue Brief]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이재원 연구원(광장)	2019.7
3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미중(美中) 무역분쟁, 그 다음 수순은?	이재민 교수(서울대)	
4	미중(美中) 무역협상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장윤종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원)	
5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ébastien Miroudot 박사 (OECD)	
6	미국 보호무역조치의 새로운 무기(new weapon), 통화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주현수 변호사(광장)	

❖ 2019년

7	BREXIT의 배경, 현황 및 전망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19.5
8	BREXIT에 대비한 "무역연속성협정": 영국-칠레 간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9	WTO 개혁 논의: 상소기구 개혁을 중심으로	김혜수 변호사(광장)	
10	CPTPP on the Go: Next Step is Enlargement	Shujiro Urata(와세다대학교)	2019.1
11	The USMCA: What it Tells us about U.S. Trade Policy and What it Means for Korea	Richard O. Cunningham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12	미국의 독자적 경제 제재와 기업의 딜레마	이현송 변호사(광장)	

❖ 2018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argeting China	Jeffrey J. Schott 박사(PIIE) Lucy Lu 애널리스트(PIIE)	2018.10
2	Moving from One Landmark to the Next: What the New EU-Japan EPA Mea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3	국제통상과 안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정기창 변호사(광장)	
4	최악의 세계무역환경과 우리의 대응	박태호 원장(광장)	2018.7
5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규제 현황과 평가	최석영 고문(광장)	
6	EU의 무역구제규범의 현대화: 최근 규범 개정에 대한 분석 및 WTO 합치성 검토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